

Incoterms 2010과 CISG*

박 남 규**

-
- I. 서 론
 - II. Incoterms와 CISG의 존재 이유
 - III. Incoterms의 특징과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 IV. CISG체제내에서의 Incoterms 2010의 역할
 - V. 결 론
-

주제어: CISG, Incoterms 2010, 물품인도의무, 위험이전과 비용분담의무,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I. 서 론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1년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 이 논문은 2010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무역학전공 교수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상거래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며 조건의 총 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였고 조건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1980년에 채택되어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CISG)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입¹⁾하여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엔협약은 매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위험이전,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국의 당사자들은 이들 문제들에 대하여 통일된 국제적 수준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의존하기 보다 계속해서 유엔협약을 채택하고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Incoterms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에 지나지 않고 조약이나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이 당해 계약의 해석기준으로서 이를 채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비하여 CISG는 당사자들이 적용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시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Incoterms는 물품매매계약 분야에서 기업간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인도의무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비용 및 위험을 규정하고 있다.

물품인도의무와 위험 및 비용의 분담 및 이전은 CISG에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양자의 관계를 조명하며 Incoterms 2010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2010년 12월31일 현재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무역국을 포함하여 모두 76개국이 가입하였다. (www.uncitral.org/uncitral/en/uncitral-texts/sale-goods/1980-CISG-status.html)

II. Incoterms와 CISG의 존재 이유

매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 거래 때마다 모든 사태를 다 예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약정하지 못한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관습과 준거법이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Incoterms와 CISG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ncoterms는 나라마다 다양한 상관습의 해석기준을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CISG는 무역거래에 적용할 법을 통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CISG는 “당사자는 합의된 관습(usages to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및 당사자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관행(practices that the two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에 구속된다.”는 취지를 규정²⁾함으로써 상관습(commercial usages and practices)에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관습에 대한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계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관습은 ① 양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 ② 국제무역상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당해 특수무역에 관계되는 형태의 계약의 당사자간에 상례적으로 준수되는 것이어야 한다.³⁾

당사자가 Incoterm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Incoterms가 당연히 관습으로서 묵시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인코텀즈가 당사자사이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기존의 관습을 집대성한 측면과 상당히 시대를 앞선 참신한 내용⁴⁾이 있어서 무역관계자에 의해서 상례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계약의 묵시적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라는 학자의 견해⁵⁾에 필자도 공감⁶⁾하고 있다.

2) CISG 제9조 제1항.

3) CISG 제9조 제2항.

4) 예컨대, Incoterms 1990부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종이서류를 EDI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때문에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인코텀즈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경우에만 비로소 인코텀즈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현 각국의 관행과 인코텀즈의 규정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인코텀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코텀즈를 사용하면 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계약규정에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CISG는 계약규정과 인코텀즈를 적용해도 당사자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유용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CISG는 인코텀즈가 언급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대한 분쟁을 피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⁷⁾

위와 같이 CISG에는 상관습에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만 CIF, FOB 등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규정은 일체 없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Ⅲ. Incoterms의 특징과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1) Incoterms의 특징

Incoterms규칙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중심으로 운송 및 보험계약의무, 위험이전, 비용의 배분,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 인도의 서류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Incoterms가 매매계약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⁸⁾ 때문에 Incoterm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 예컨대, 매매대금이나 지급방법, 물품 소유권의 이전이나 계약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상의 명시조건이나 그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5) 新堀 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p.18.

6) 박남규, “정형거래조건과 비엔나 협약”, 「무역상무연구」, 제10권, 1997, p.13.

7) Roadmap to Incoterms 2000/<http://cisgw3.law.pace.edu/cisg/incoterms2000.html>.

8) Incoterms 2010 서문 제4항.

1) 물품인도의무

Incoterms는 무엇보다도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매매계약에 인코텀즈 2010이 삽입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역할, 비용 및 위험의 분담 문제가 정확하게 구획된다. 인코텀즈가 매매계약에 삽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따른 역할과 비용분담은 당사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 상호간에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고, 나중의 거래에서도 종전에 거래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거래관계를 확립하거나 매매계약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코텀즈가 물품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관습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 예컨대, 물품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관하여, 각 조건의 매도인의 의무 제4항(A4)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도되는 방법이 항구마다 다른 경우에는 물품인도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FAS, FOB, CFR, CIF 조건의 매도인의 의무 제4항(A4)에서는 ‘당해 항구에서의 관습적인 방법으로(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라고 하는 표현으로 거래의 관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2)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의무

Incoterms에서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에 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 자신이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했을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코텀즈의 각 조건에서는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물품의 인도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조기 이전의 원칙이 있다. 즉,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을 지연시킬 소지가 매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매수인이 합의한대로 인수하지 않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시, 예를 들면 선적시기나 인도장소에 대한 지시 등을 매수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이 인도전이

라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거래조건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위험 및 비용의 조기 이전 원칙에 대한 대전제는 물품이 계약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조건은 F조건이나 C조건인 경우에는 물품의 선적이나 발송을 위한 조치가 완료된 때, D조건인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때 물품이 계약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로서, 한 사람의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수량의 확인 없이 선적되어 각 매수인에게 송부되는 산적화물(bulk cargo)인 경우에는 위험 및 비용의 이전은 그 물품이 충당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개별 매수인을 위한 수량의 충당이 없는 한 개별수량의 충당이 있을 때까지 위험과 비용은 이전하지 아니한다.

(2)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당사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도 및 위험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논구한다.

1) 인도의무 이행 및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의 일치

Incoterms 2000은 전통적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FOB, CFR, CIF조건에서 물품을 적기에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의 본선에 그 항구에서의 관례적인 방법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이 조건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며 매도인이 자신의 인도의무를 완료하였을 때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하면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위험은 이전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Incoterms 2010에서는 인코텀즈 제정 이후 수세기 동안 당사자사이에서 상징적인 경계선으로서 역할을 하여온 ship's rail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매도인이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고 규정⁹⁾하여 철저히 위험이전을 인도의무이행과 연동시켰다.

다음은 Incoterms 2000과 2010의 FOB조건 매도인의 의무 가운데 인도와

9) Incoterms 2010 FOB, CFR, CIF 조건 각각의 매도인의 의무 제5항.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 것이다.

Incoterms 2000

A4 Delivery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and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5 Transfer of risks

The seller mus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B5, bear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such time as they have passed the ship's rai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 2010

A4 Delivery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either by placing them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loading point, if any, indic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In either cas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greed date or within the agreed period and in the manner customary at the port. If no specific loading point has been indicated by the buyer, the seller may select the point within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A5 Transfer of risks

The seller bears all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until they have been delivered in accordance with A4 with the exception of loss or damage in the circumstance described in B5.

규정의 개정에 따른 CISG와의 관계 등은 다음 장에서 논설한다.

2) 인도 의무 이행범위의 확대

제조물매매(manufactured goods)와 달리 1차상품매매(sale of commodities)의 경우에 흔히 화물은 운송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전매된다. 이러한 경우 중간에 판매한 매도인은 물품이 이미 첫 번째 매도인에 의하여 선적되기 때문에

물품을 선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는 대신에 그렇게 선적된 물품을 조달(procure)함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운송도중 전매의 가능성이 있는 전통적인 내수로 및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FAS, FOB, CFR,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할 의무에 대신하는 의무로서 선적된 물품을 조달할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¹⁰⁾함으로써 인도 의무 이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3) 비용부담의무의 명확화

CPT, CIP, CFR, CIF, DAT, DAP, DDP 조건에서 매도인은 약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 운임(freight)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러한 운송비용(freight costs)은 통상 매도인의 총 매매가격에 산입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운송비용은 간혹 항구나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물품을 취급하고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운송인과 터미널 운영자는 으레 이러한 비용을 물품을 수령하는 매수인에게 청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이중지급, 즉 총 매매가격의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한번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운송인이나 터미널운영자에게 또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Incoterms 2010은 관련 조건¹¹⁾에서 그러한 비용을 할당함으로써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IV. CISG체제내에서의 Incoterms 2010의 역할

(1) 물품의 인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지를

10) Incoterms 2010 FAS, FOB, CFR, CIF 조건 각 조건의 매도인의 의무 제4항.

11) Incoterms 2010 CPT, CIP, CFR, CIF, DAT, DAP, DDP 각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6항 및 매수인의 제6항.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준화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의 무역관습을 반영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Incoterms 2010인 것이다.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CISG 제31조는 첫째,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면 된다. 인도장소의 지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이 복합운송의 경우와 같이 복수의 운송인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운송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¹²⁾ Incoterms 2010 CPT, CIP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계약중에서 물품의 송부가 수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인도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도록 (placing the goods at the buyer's disposal at that place) 규정하고 있다.¹³⁾ 이 경우는 물품이 하인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또는 창고증권이나 선하증권 등 당해 물품의 지배권을 화체하는 증권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그러한 인도준비완료의 통고를 함으로써 만족시킬 수 있다.¹⁴⁾

셋째, 계약체결당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었던 장소에서 계약의 목적물을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것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인도의무 이행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¹⁵⁾ 즉, CISG 제31조 제b항과 제c항은 물품을 특정장소 또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이 직접 처분가능하도록 하는 운송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는 Incoterms 2010의 EXW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2) 위험의 이전

CISG 제66조-제70조는 위험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CISG와

12) CISG 제31조 제a항.

13) CISG 제31조 제b항.

14) CISG 제32조 제1항.

15) CISG 제31조 제c항.

Incoterms 2010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1)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교부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 그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¹⁶⁾ 여기서 특정장소란 무역실무상으로는 Incoterms 중의 어느 한 가지 무역조건을 지정함으로써 명확하게 된다.

위험이전에 관한 또 하나의 기본적인 CISG상의 원칙은 물품을 특정장소에서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송부되기 위하여 제1운송인에게 교부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¹⁷⁾ 위의 경우에 물품의 권리를 화체하는 서류들을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위험의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¹⁸⁾

Incoterms 2010에 규정된 11개 조건상의 위험이전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W: When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FCA: When goods are delivered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CPT: When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CIP: When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DAT: When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named terminal at the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P: When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 When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cleared for import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16) CISG 제67조 제1항.

17) CISG 제67조 제1항.

18) CISG 제67조 제1항 후단.

named place of destination.

FAS: When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e.g., on a quay or a barge)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d so delivered.

FOB: When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d so delivered.

CFR: When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d so delivered.

CIF: When goods are placed on board the vessel or procured so delivered.

11개 조건은 모두 다 철저하게 위험이전을 인도 의무와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원전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다. 종래 위험이전의 분계점을 전통적인 해상운송 조건인 FOB, CFR, CIF 조건에서 ship's rail로 표시하여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많았으나 ship's rail 용어를 완전 삭제함으로써 인도 의무와 위험이전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2) CISG 제67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의 특정과 위험이전의 시기에 관한 것으로 위의 1)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물품이 하인(marking), 운송서류(shipping documents),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될 때 까지는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whether by markings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s, by notice given to the buyer or otherwise.)”고 규정하고 있다.

Incoterms 2010에는 각 조건 매수인의 의무 제5항 하단에 위험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provided that the goods have been clearly identified as the contract goods).”고 각 조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Incoterms 2000에서의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어야 한다(the goods have been duly appropriated to the contract).”는 규정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상의 혼란이 없도록 CISG의 규정과 궤를 같이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산적화물(the bulk)의 경우인데 이 경우 매매관련 물품이 목적지에서 산적화물과 분리되기 전에 물품이 계약물품으로서 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산적화물 전체가 확정되는 한 선하증권에 의하여 산적화물의 일부가 계약에 충당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각 매수인이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된 때로부터 비율에 따라 위험을 부담해야만 하므로 목적지에서 산적화물을 나누기 전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⁹⁾ 결론적으로 Incoterms 2010과 CISG 제67조 제2항과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험이전에 관한 또 하나의 예외적인 원칙은 “운송 중 물품이 매매(goods sold in transit)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²⁰⁾”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위험은 물품인도의무 완료시에 위험이 이전되는, 전통적인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CFR 및 CIF 조건의 위험이전원칙의 예외이다.

이 원칙에는 다음 2가지의 예외가 있다.

① “그러나 상황으로 보아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화체한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²¹⁾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위험은 계약체결전에 이전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매매를 물품의 제2의 매수인을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수령하는 제1의 매수인과 동일한 지위로 놓는 서류매매로 간주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²²⁾

② 만약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고 또한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에 속한다.²³⁾

계약체결시를 위험이전시기로 하는 원칙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위 예외 ①

19) Jan Ramberg, "To What Extent to INCOTERMS 2000 Vary Articles 67(2),68 and 69?", Journal of Law and Commerce, June 2005,p.219.

20) CISG 제 68조 전단.

21) CISG 제68조 중단.

22) Jan Ramberg, op.cit.,p.220.

23) CISG 제68조 하단.

을 적용하여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소급하여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발생시에 각국의 판사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²⁴⁾는 점에서 유념해야 하며, 운송 중 물품을 매매하는 당사자는 위험이전시기를 운송의 시작 또는 종료시로 한다는 취지를 계약에서 분명히 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주로 현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번 전매되기도 하는데, 이 때 종이서류의 점유가 제2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상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통가능선하증권이 대단히 중요하다. 운송 중에 제2의 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매수인은 CFR, CIF 조건의 매도인에게 유통가능선하증권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²⁵⁾

4) CISG와 Incoterms 2010이 가장 차이가 분명한 규정이 CISG 제69조이다.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수반한 경우, 또는, 물품이 운송중에 전매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위험이전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조항이다. 즉, 위험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또는 매수인이 소정의 이행기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을 위하여 언제라도 그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매수인에 의한 계약위반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위험은 매수인이 그 위반을 범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²⁶⁾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또한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을 위하여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실을 매수인이 스스로 알았거나 또는 매도인의 통지에 의하여 알았거나를 막론하고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안

24) 新堀 聰, 전게서, p.109.

25)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1999, p.112.
Incoterms 2010, CFR, CIF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8항.

26) CISG 제69조 제1항.

때로부터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²⁷⁾

불특정물품은 물품이 특정되었을 때 위험이 비로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나 물품이 아직 명확하게 계약의 목적물로서 특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매수인이 언제라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²⁸⁾ 불특정상태에 있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는 매수인의 위험부담이 되는 것이다.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정히 인도되었다는 것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처분가능하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²⁹⁾가 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권을 제공하는 계약위반을 구성한다.

위험의 이전은 국제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로서 인코텀즈를 참조하는 것은 위험에 관한 인코텀즈의 규칙의 적용을 의도한 것이고 위험이 이전하는 시기에 대하여 CISG 위험규칙을 대신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V. 결 론

Incoterms 2010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2005년 3월1일부터 체결국이 되었다. 양자는 그 법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무역 수행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고는 Incoterms 2010의 개정 시행에 따라 다시 한번 개정 Incoterms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적용시 유의할 점을 논급하였다.

당사자의 의무 측면에서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위험이전에 관한 원칙으로 종전의 위험이전 분계선으로서의 ship's rail 개념이 완전히 제거되어 인도의무 이행 및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내용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물품의 인도의무이행의 범위를 확대하여 물품의 조달도 인

27) CISG 제69조 제2항.

28) CISG 제69조 제3항.

29) Incoterms 2010 각 조건 매도인의 의무 제7항.

도의무이행으로 규정하였다는 점, 셋째, 종래 이중 비용부담의 문제 소지가 있었던 터미널운영비 등의 부담문제를 명확히 할당하여 이중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ISG 체제내에서 Incoterms 2010의 역할로 물품의 인도와 위험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고 상호 보완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1. 박남규, “정형거래조건과 비엔나 협약”, 「무역상무연구」, 제10권, 1997.
2. 新堀 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
3. Roadmap to Incoterms
2000/<http://cisgw3.law.pace.edu/cisg/incoterms2000.html>.
4. Jan Ramberg, "To What Extent to INCOTERMS 2000 Vary Articles 67(2), 68 and 69?", Journal of Law and Commerce, June 2005.
5.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1999.
6. Incoterms 2000, 2010

ABSTRACT

Incoterms 2010 and CISG

Park, Nam Kyu

Incoterms 2010 have been revised in line with the latest changes in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is essential. The Incoterms rules on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trade. Reference to an Incoterms 2010 rule in a sale contract clearly defines the parties' respective obligations and reduces the risk of legal complications.

In 1980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was introduced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is paper focuses on harmony and ability of the CISG and Incoterms 2010 to govern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Key Words : CISG, Incoterms 2010, 2000, Delivery, Transfer of risks, Allocation of costs
